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5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정태호 · 김영환 · 박민규
이학영 · 맹성규 · 조인철
조정식 · 김 윤 · 진성준
김태년 · 정일영 · 김영배
정진욱 · 김영진 · 박지혜
의원(15인)

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체납처분 절차를 단순화하여 국가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채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상습적인 채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함.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정책적 결과를 얻고자 함.

다만, 국세외수입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수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비례성 원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1) 국세외수입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국가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 정의하여 국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2)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전체를 적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전체를 적용하되, 다만, 간접강제 수단만 적용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용보험료, 조달사업 수입 등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한 통계관리를 위해 제4장(보칙)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및 물적납부의무 부여(안 제10조, 제11조)

-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외수입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국세외수입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 2)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위탁자가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물적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면탈을 방지하고 징수 실효성을 제고함.

다. 과세정보 등의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14조)

- 1)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포함)은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함.
- 2) 5천만원 이상의 국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국세외수입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확인(안 제15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사, 납부계획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 방지를 위한 간접제재 수단 도입(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국세외수입을 완납할 때까지 각 중앙관서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하도록 함.
-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국세외수입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체납된 국세외수입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4)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

상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외수입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1) 현재 대부분의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국세외수입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압류, 매각, 청산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들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세외수입 징수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36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리보류(안 제39조)

실효성 없는 징수 행정 방지를 위해 배분액 미달,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정리를 보류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제고함.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외수입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외수입”이란 중앙관서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가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위약금, 징계부과금 및 환수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나.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양곡관리사업 수입, 조달사업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2. “국세외수입관계법”이란 국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국세외수입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제10조의 제2차납부의무자, 제11조의 물적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체납”이란 국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6.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7. “가산금”이란 연체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때에 이 법 또는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국세외수입징수금”이란 국세외수입,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0.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외수입징수금을 말한다.

11. “징수”란 이 법 및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국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2.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국세외수입의 징수·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세외수입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2장(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제3장(체납처분 절차), 제4장(보칙) 및 제5장(벌칙)을 적용한다.

2. 제2조제1호나목의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2장(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제3장(체납처분 절차), 제4장(보칙) 및 제5장(벌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16조(대금지급 정지)부터 제21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까지는 제외한다.

3. 제2조제1호다목의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4장(보칙)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관리 사무의 총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성과관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국세외수입의 내용 및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국세청장의 징수권한 등) 국세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장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제7조(국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국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외수입

3. 가산금

제8조(가산금) ① 국세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국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외수입관계법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부과기준 등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국세외수입 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게 국세외수입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② 국세외수입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외수입징수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외수입의 납부고지일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국세외수입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탁관련 물적납부의무)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국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납부고지일이 도래하는 국세외수입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8조에 따른 가산금

제12조(제2차 납부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

부의무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2차 납부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세외수입의 종류, 금액,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부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부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자

2. 제11조에 따라 물적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부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정보 등의 이용 등)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 제15조에서 같다)은 체납된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과세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패확인) ① 국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패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국세청장은 실패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패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패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금지급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 제18조에서 같다)은 100만원 이상의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각 중앙관서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후 해당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 없이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국세외수입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국세외수입관계법에서 국세외수입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국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외수입(정리보류한 국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47조에 규정된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이하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고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외수입이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외수입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외수입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외수입을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⑦ 세무공무원(「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 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납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채납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국세외수입, 가산금, 채납처분비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채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채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람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채납액이 500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채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채납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채납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채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채납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채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채납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

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채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에게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
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채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채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은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채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채납자의 소멸대상채납
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채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채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국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체납처분 절차

제24조(체납처분)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체납자가 제23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

제25조(압류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제23조 또는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외수입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압류의 효력) ①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登記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登記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登記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登記된 선박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登記된 선박은 제외한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국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제25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제27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증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8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

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30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제25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0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외수입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32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

음할 수 있다.

제34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외수입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외수입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제35조(체납처분 중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외수입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체납처분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정리보류) ① 국세청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35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준용)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 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체납사실의 통보 및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등 인적사항
2. 체납된 국세외수입의 종류, 부과근거 및 부과금액
3. 그 밖에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누

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국세외수입의 내용 변경 및 면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그 밖의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②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국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자납부 등 납부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운영 상황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국세청장은 징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1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국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국세 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44조(국세외수입징수금의 납부 방법) ① 국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외수입납부대행기관 (이하 “국세외수입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외수입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외수입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33조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40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40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6조(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정경제부장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국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국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국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 시스템의 운영

3. 국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국세외수입의 일괄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은 국세외수입 수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① 국세외수입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8조(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국세외수입징수금의 귀속) 국세청장이 이 법에 따라 징수한 국세외수입징수금(체납처분비 제외)은 국세외수입관계법에서 정한 중앙관서의 회계 및 기금에 귀속된다.

제5장 벌칙

제5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